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  
제1차 국방위원회

#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검 토 보 고

〈방위협의회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근거 마련 등〉  
■ 이수진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826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류 승 우

#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I . 제안경위 .....         | 1 |
| 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..... | 1 |
| III . 검토의견 .....       | 2 |

## 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이수진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1. 22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1. 25.

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방위협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,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제3항·제4항 신설).

### 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방위협의회 지원 시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#### [신·구조문대비표]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· ② (생략)<br><u>&lt;신설&gt;</u> |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br>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위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방위협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|
| <u>&lt;신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u>③</u>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□ 현행법 상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- 「예비군법 시행령」<sup>1)</sup>에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, 읍·면·동 단위로 설치·운영하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 단위로 설치·운영하는 직장방위협의회로 방위협의회를 구분하고 있고 그 기능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.

□ 한편 「통합방위법」 제7조<sup>2)</sup>에 따라 동법 제5조에 따른 ‘지역 통합 방위협의회’에 「예비군법」상의 방위협의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재 시·군·자치구 이상의 방위협의회는 ‘지역 통합방위협의회’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.

하지만,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<sup>3)</sup> 지역별로 행정·재정적 지원이 다소간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, 읍·면·동 단위의 방위협의회는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,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.

---

1)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3조(방위협회의의 종류) ①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하다)는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나눈다.

제3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방위작전 시 차량·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
2. 지역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
3.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 양양과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의 전파에 관한 사항
5.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(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에만 해당한다)
6. 그 밖에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

2) 제7조(협의회의 통합·운영) 중앙협의회,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·운영할 수 있다.

1.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

3)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(지역 통합방위협의회)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- 이에 개정안은 방위협의회 설치·운영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,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 협의회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에 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
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
| 문 의 처        |
| 02)6788-5307 |